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- 0041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(야외 운동기구)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7일  
국가기술표준원장

###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(야외 운동기구)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(안) 입안예고

#### 1. 제정취지

공원,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‘야외 운동기구’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

#### 2. 제정내용

- (적용범위) 이 기준은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기준은 야외 운동기구 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재료와 제품의 구조 및 설계 기준은 포함하지만, 제조 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. 또한,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제외하고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서 관리하는 실내 헬스기구,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다른 안전기준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

- (안전요건) ① 재료: 목재 및 목공품, 금속, 고무 및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요건, ② 구조 및 설계: 접촉면처리, 머리·목·손가락·발·다리 등 신체끼임 방지 요건, 무게와 저항 요건, 발판, 구동부품, 손잡이, 로프, 벨트, 체인 등 부속품 요건

\* 상세 안전요건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(안) 참고

#### 붙임 1. 공고문

1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행규칙 개정안
3. 야외 운동기구(부속서 24) 제정(안)

### 3. 의견제출

[붙임]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19. 4. 29(월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

- 주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(우 27737)
- 전화/팩스 : 043-870-5460/043-870-5677
- 이메일: consumer1@korea.kr